

1. 개정이유

현재 물류단지 안에 있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게 하는 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 중 공동주택과 종교 관련 시설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설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감면비율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동주택과 종교집회장, 종교시설을 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에 해당하는 준치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3과 같 다. ② · ③ (생략)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 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10호 가목,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 터 제25호까지에 해당하는 존치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시설 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